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출 연월일	2015.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 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 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11조)
- 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비(안 제12조)
- 마. 재정공시(정기공시) 횟수(연 1회→2회)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제32조의3, 제33조제9항, 제37조의2, 제60조제3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15. . . ~ 15. . .)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064, 2015.11.3.)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반영(여성가족과-10043, 2015.11.4.)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성별 고려사항 반영(제2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을 “제33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이 장에서”를 “(이하”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려운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된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소된 때”를 “기소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이유”를 “사유”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하며, 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을 “영 제6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를 “연 2회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및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간사) 공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5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

----- 인정되는 경우

3. -----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유 -----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11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
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대행한다.

<신설>

<신설>

제5조(위원회 기능) -----
-----.

1.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
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
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
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
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
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신 설>

<신 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
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
----- 심의하며,
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
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
정사항

<신 설>

<신 설>

제13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 시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2. 영 제68조제3항 -----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2회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및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적위원 -----

-----.

제14조(간사) 공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5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공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0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원회"는 "공시위원회"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901-6135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 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법 제60조 3항 관련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 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 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 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7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④ 삭제 [2014.11.2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